

## 4·3 과거청산과 '희생자'

- 재구성되는 죽음에 대한 재고 -

고성만\*

< 차례 >

- I. 들어가며 - 그들의 시선에서 과거청산
- II. '희생자'의 탄생
- III. '희생자'를 의식하는 말하기의 몇 가지 양상
- IV. 나가며 - 다시 '누가 희생자인가'에서부터

### 국문요약

이 논문은 4·3특별법 제정 이후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4·3 과거청산 가운데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희생자 심의·결정'을 죽음의 선별과 재구성이라는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공인된 사자(死者)인 '희생자'와 거기서 비롯되는 희생 서사를 '희생자'에서 배제되는 사자(死者)의 유가족들과의 면담을 통해 고찰한 것이다. 이를 통해 '희생'을 4·3에서 비롯된 다종다양한 죽음이 공적 단계로 격상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재편된 것으로 접근한다. 또한 과거청산이 진행될수록 심화되어 가는 희생 서사가 '희생자에서 제외 대상' 범주의 당사자들을 어떻게 규율하는지, 그것은 과거청산이 초래하는 새로운 금기의 영역으로 그들을 재위치시키는 동시에 그들의 말과 행동을 억압하는 것은 아닌지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죽음의 인위적 재편에 내재된 폭력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희생'의 경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한다.

주제어 : 4·3, 4·3특별법, 4·3위원회, 과거청산, 4·3희생자, 폭도, 사자(死者)의 경계, 희생 서사

\* 교토대학 대학원 문학연구과 행동문화학전공 사회학전수 박사후기과정. 이 논문을 작성하는데 있어 면담에 참여해 주신 유가족 분들, 그리고 세 분의 심사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1. 들어가며 - 그들의 시선에서 과거청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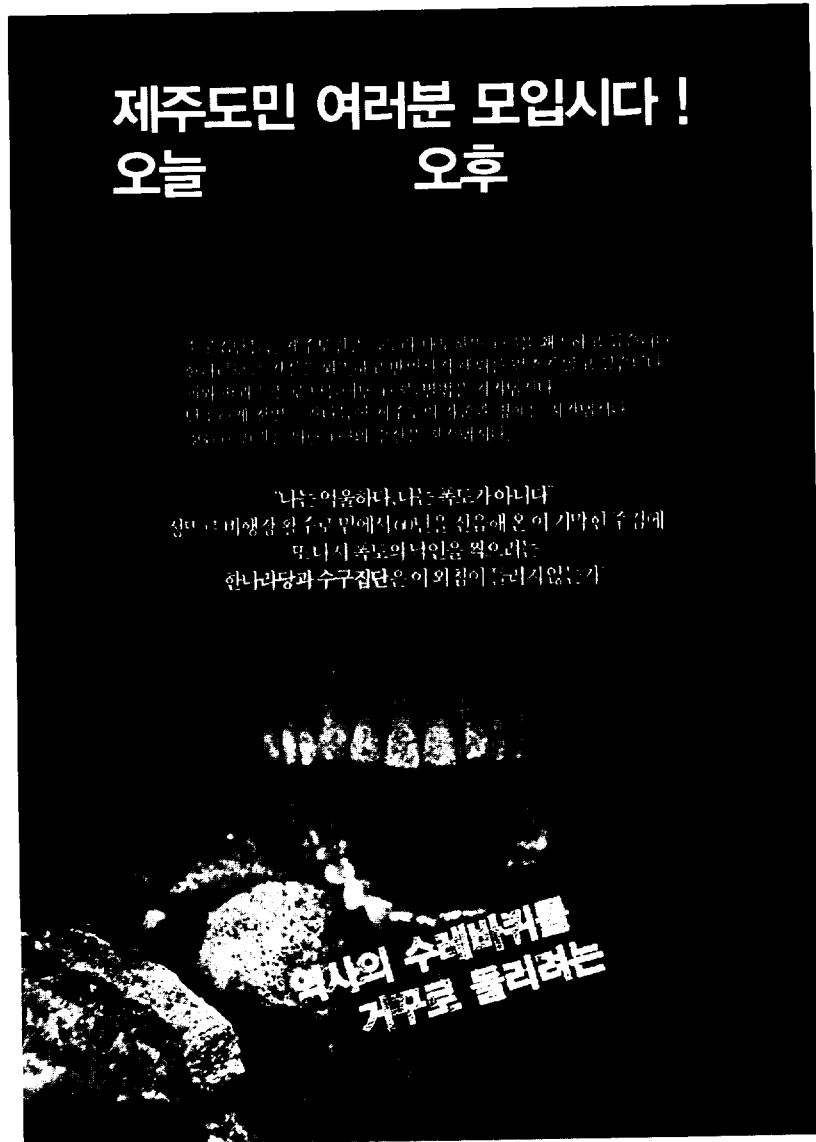
과거청산을 통해 4·3으로 인한 죽음은 '희생'으로 공인될 수 있게 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누가 희생자인가'<sup>1)</sup>를 둘러싼 공방은 다양한 국면에서 지속되고 있다. 일련의 과거청산 성과에 대한 우익 측의 이의 제기<sup>2)</sup>와 그에 대항하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위원회), 유족, 도민 사회의 합의된 입장도 기본적으로는 '희생자'를 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4·3위원회가 공산폭도를 희생자로 선정한 잘못이 있고, 4·3특별법에 따라 희생자로 선정한 것은 무효'<sup>3)</sup>라는 주장과 그에 대해 '수구집단들은 제주도민을 폭도라 매도하며 4·3을 왜곡(…) 단호하게 전열을 가다듬어 제주도의 자존과 명예를 지켜냅시다'[그림 1]라며 대응하는 양상이 대표적이다.

1) 이 논문에서 '희생자'는 2000년 1월 제정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하 4·3특별법)과 이 법을 근거로 전개되는 4·3위원회의 '희생자심의·결정'을 통해 공인되는 사자(死者)를 의미한다. 4·3특별법 제2조(정의)는 '희생자'를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자 또는 수형자로서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4·3위원회, 2003)를 비롯한 대다수의 문헌에서는 '경찰·군인·서청·자경대·옹원대·민보단' 등을 '토벌대'로, '유격대·자위대·인민군·폭도·공비·괴한' 등을 '무장대'로 표기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각각 '토벌 그룹'과 '항쟁 그룹'으로 표기한다.

2) 한국사회에서 4·3을 둘러싼 현저한 인식의 차이와 첨예한 갈등을 반영하듯 4·3 당시 군인과 경찰, 우익 단체원으로 토벌에 참가했던 이들과 항쟁그룹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던 민간인의 유족들은 과거청산기에 지속적으로 4·3위원회 등을 피고로 하는 소송을 진행시키고 있다.

3) 이선교(목사)는 2008년 1월10일 국제외교안보포럼 강연회에서 "제주 4·3사건 희생자는 폭도이며, 4·3평화공원은 폭도공원"이라고 발언했다가 4·3 유족 97명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이에 대해 2010년 4월 제주지방법원은 "이 목사는 희생자들에게 1인당 30만원씩, 유족들에게는 1인당 2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림 1)



2009년 4월 3일 '한나라당 제주4·3특별법개정안 반대 범도민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주4·3특별법 사수와 수구집단 망동 분쇄 범도민대회'에서 배포된 유인물의 앞면

한편, 갈등하는 두 진영이 형성하는 담론 구조는 그들을 서로 대치선상에 위치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시선을 옮겨 모두가 거론하고 있는 '희생자'를 제3의 위치에서 염두하고, '희생자'가 아닌 소위 폭도라 불리는 이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양측의 차이를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폭도를 겨냥하는 타자화된 시선이 양측 모두에서 동일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희생자가 아니라 폭도'라는 말과 그에 대한 반공(反攻)으로 전개되는 '폭도가 아니라 희생자'라는 말이 착란되어 버리는 상황. 이것은 다시 '누가 희생자인가'라는 물음을 필요로 하게 한다.

이러한 공방 속에 '4·3사건으로 억울하게 희생되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폭도란 말이나?'<sup>4)</sup>를 비롯하여 '아직도 슬픔을 가누지 못하는 유족들의 피눈물이 흰색인지, 붉은 색인지를 똑똑히 보아 달라'<sup>5)</sup>, '4·3 희생자 모두를 "폭도"로 매도하면서 우리 유족들의 가슴에 또다시 대못을 박고 있습니다'<sup>6)</sup>와 같은 '희생자' 측의 조직화된 말들은 '희생자의 명예를 폄훼하려는 책동'<sup>7)</sup>에 대한 대항구호로 제주사회에서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sup>8)</sup>. 이러한 말의 효용은 우익 측의 비난에 대응하며 그들

4) 2009년 3월 1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렸던 제주특별자치도 연합청년회의 기자회견 구호에서 발췌.

5) 2009년 3월 31일 제25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의원 현우범의 '5분 발언' 내용에서 발췌.

6) 제주4·3희생자유족회·재경제주4·3희생자및피해자유족회·재일본제주4·3사건희생자유족회·제주4·3희생자후유장애인협회·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4·3 왜곡 망언자를 고발합니다」, 2008.

7) 2009년 3월 24일 발표된 '한나라당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반대 범도민대책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 연합청년회'의 기자회견문 「무분별한 4·3모독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에서 발췌.

8) 이밖에도 "이들 극우보수세력들은 4·3특별법에 의해 결정된 희생자를 폭도로 매도하는가 하면 우리 '4·3유족회'를 '인민유격대 출신 사망자들의 모임', 제주4·3평화공원을 '좌파 양성소'라고 폄하하는 등 '4·3왜곡'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홍성수, '제주4·3 61주년 위령제 인사말씀', 2009)와 같은 발언들이 힘을 얻고 있다.

과 갈등 구도를 확고히 할수록 상승하지만, 타자화된 대상으로 폭도를 설정한다는 점에서는 상대측과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희생자'의 정체성을 폭도의 그것과 분리시켜 차별성을 강조하는 일련의 '희생자' 측의 말과 행동을 통해 죽음에 대한 인식의 경계가 변용되고 있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다.

과거청산이라는 사건과 사자(死者)의 공식화 국면에서 다시 전개되는 죽음에 대한 해석과 인식의 차, 동시에 '희생자'를 분기점으로 그어지는 경계선을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억울한 죽음, 장렬한 전사, 비명횡사와 같은 다종다양한 죽음이 과거청산을 통해 '희생'으로 재편되고 공인되는 과정에서 전개되는 죽음의 정치, 그 산물로서의 '희생자'와 거기서 비롯되는 희생 서사를 주목해야하는 이유는 그 때문일 것이다. 사자(死者)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죽음의 정치를 고찰하고자 할 때 다음의 田中(2010:16)의 논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치적으로 그어진 경계선 내의 사자(死者)만이 '사자(死者)'로 여겨진다. 그러한 경계선을 긋는 정치권력은 '사자(死者)'의 범위를 둘러싸고 갈등하게 되는데, 권력에 복종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경계선을 내면화하거나, 위화감을 느끼거나, 때로는 거부하기도 한다. (...) 국가 혹은 어느 시기의 정권, 그 외의 인간 집단 등이 어디서, 어떻게 사자(死者)의 경계선을 긋고 또 수정하는가.

의미있는 죽음의 범위를 규정하는 정치,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자(死者)'의 경계를 둘러싼 갈등과 투쟁 양상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계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4·3의 경우, 田中가 언급했던 '사자(死者)의 경계선'은 국면별로 다양하게 형성·변용되어 왔는데<sup>9)</sup>, 과거청산기에 4·3위원회에서 합의된 '희생자 심의·결정 기준'은 그에 따

라 선별되어 공인되는 죽음이 법적·행정적 구속력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이전 시기의 경계선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었다.

‘희생자 심의·결정 기준’에는 ‘희생자 범위에서 제외 대상’(이하 ‘제외 대상’)을 별도의 조항으로 두고 있는데, 이를 통해 ‘희생자’와 거기서 배제되는 사자(死者)가 동시에 구체화되게 된다. 거기에는 절대 다수의 ‘희생자’와 그들의 ‘유족’뿐 아니라 ‘폭도’라 불리는 사자(死者)와 그들의 유가족 역시 당사자로 관여하게 된다. 경계선 밖의 죽음으로 재위치 되어 버린 이들에게 지난 10여년의 과거청산은 어떠한 의미였을까. 과거청산에 대한 주류적 평가<sup>10)</sup>가 과연 그들 ‘제외 대상’ 당사자들에게도 유효한 것이었을까.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박찬식과 양정심의 논의는 주목할 만하다. 박찬식(2008:518-520)은 4·3위원회의 진상조사가 ‘희생자 차별’을 초래했다고 언급하면서, ‘무고하게(까닭 없이) 살해된 것과 까닭이 있어 살해된 것의 구별’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양정심(2008:244)은 더 나아가 이것을 ‘현재의 진상규명운동의 또 하나의 문제’라고 진단하

9) 사건에 대한 인식, 추도의 대상과 방식 등에서 갈등하던 사월제 공준위와 제주4·3 민간인유족회가 1994년부터는 합의를 통해 합동위령제를 개최할 수 있었다. 합의란 구체적으로 ‘1995년부터 4·3유족들과 51만 도민의 화합을 위해 극단적인 용어(폭동과 항쟁)를 서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전제’ 혹은 ‘4·3으로 인해 사망했으나 도민의 정서를 고려, 도민에게 혐오감을 준다고 사료되는 인사는 본 위령 대상에서 제외한다’와 같은 것이었다. 때문에 이 시기를 기점으로 김○○, 이○○, 조○○ 등 항쟁 지도부 출신의 사자(死者)가 위령의 대상에서 배제되게 됐다. 과거청산기의 ‘희생자 심의·결정 기준’과 같은 공적 영역에서의 합의가 이미 제주 사회에서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10) 4·3과거청산에 대한 평가는 ‘과거사의 진실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이 어떻게 미래를 향한 밑받침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2008:104), ‘우리 현대사 정립에 하나의 획을 긋는 사건’(양조훈 2008:108), ‘과거청산의 하나의 범례로서의 프로세스가 실현된 최초의 사례’(文京洙 2008:212) 등 대부분이 긍정적인 것들이다.

며, '남로당으로 대변되는 좌익세력과의 연관관계를 무시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역사적 사실의 한 부분을 배제시키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두 연구 모두 과거청산의 산물인 '희생'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 양정심(앞의책:243)은 피해 배상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특별법에서 제주4·3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 희생자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하지만 '피해자'와 '희생자'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자(死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박찬식(앞의책:505-518)의 경우는 4·3 특별법이 '과거청산의 정식(진상규명·책임자 처벌·적절한 배상·명예 회복·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과거 책임을 무마하는 선에서 그쳐버렸다'고 지적하면서도 4·3으로 인한 죽음은 모두 '시대적·포괄적 희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언급한다. 이러한 그의 논의는 사건을 구성하는 사자(死者)와 사건 이후에 재구성되는 '희생자'를 구분하지 않을 경우 자칫 앞뒤가 모순되는 주장이 될 수 있다.

이 논문은 위의 두 선행 연구를 발전시켜 '희생자'와 거기서 배제되는 '제외 대상'을 구분 짓는 죽음의 경계선을 재고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우선 다음의 2장에서는 죽음의 선별과 재구성이라는 관점을 통해 과거청산의 근간이 되고 있는 4·3위원회의 '희생자 심의·결정'을 재검토한다. 경계선을 재해석함으로써 '희생'을 4·3에서 비롯된 다종다양한 죽음이 공적 단계로 격상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재편된 것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이러한 경계선은 의미 있는 죽음의 범위를 형성 혹은 수정하게 하여 산자(生者)로 하여금 갈등과 위화감을 초래시키고 때로는 자기검열을 강요하면서 현재의 문제로 부상하게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3장에서는 '희생자'와 거기서 비롯되는 희생 서사가 '제외 대상', 즉 '희생자'에서 배제되는 범주의 당사자들의 말하기를 어떻게 규율하는지, 그것은 과거청산이 초래하는 새로운 금기의 영역으로 그들을

재위치시키는 동시에 그들의 말과 행동을 억압하는 것은 아닌지 고찰한다. 마지막 4장에서는 '희생자'를 탄생시킨 죽음의 인위적 재편에 내재된 폭력의 가능성을 고찰하고 희생 서사가 그어놓은 경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한다.

## II. '희생자'의 탄생

4·3에 대한 과거청산에서 한국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진행시키는 프로그램은 합의된 기준에 따라 누가 '희생자'이고, 누가 그들의 '유족'인가를 공식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희생자 심의·결정'을 통해 명예회복의 대상이나 규명해야 할 진상 등 과거청산의 범위와 내용이 구체화되어 지기 때문이다.

'희생자' 선별을 위한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4·3위원회는 2001년과 2006년에 각각 헌법재판소<sup>11)</sup>와 법제처<sup>12)</sup>의 법령 해석을 수용하여 그것

11) 4·3위원회가 구성되자마자 토벌 그룹 출신자와 항쟁 그룹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자들의 유족들이 '4·3위원회의 희생자 및 유족의 심의·결정권 등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요지의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4·3위원회 2008:167).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무장유격대에 가담한 자 중에서 수괴급 공산무장병력지휘관 또는 중간간부로서 군경의 진압에 주도적·적극적으로 대항한 자, 모험적 도발을 직·간접적으로 지도 또는 사주함으로써 제주4·3사건 발발의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 기타 무장유격대와 협력하여 진압 군경 및 동인들의 가족, 제헌선거관여자 등을 살해한 자, 경찰 등의 가옥과 경찰관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자들은 결코 현재 우리 헌법질서에서 보호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이 법에서의 희생자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1:404-405). 그리고 이 판결은 4·3위원회의 과거청산 방향을 결정짓는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게 됐다.

12) 2006년 4·3위원회는 '희생자' 범위에 군·경이 포함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법제처에 의뢰했는데, 법제처(2006)는 '희생자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과 함께 다음



을 '희생자 심의·결정 기준'에 반영시켰는데, 그 결과 [표 1]<sup>13)</sup>과 같이 1만3천564명이 '희생자'로 공인될 수 있었다.

[표 1] 4·3위원회의 '제주4·3사건 희생자 심의·결정 현황'

(단위:명)

구 분		희 생 자			
		계	사망자	행방불명자	후유장애자
신고·접수	소계	14,373	10,563	3,632	178
	인 정	13,564	9,989	3,429	146
심의·결정	불인정	31	1	1	29
	중복 또는 철회	778	573	202	3

그러나 '희생자 심의·결정 기준' 내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는 다음의 '제외 대상' 조항을 고려하면 [표 1]을 통해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희생자'에 대한 다른 경로가 가능해진다<sup>14)</sup>.

과 같이 회답했다. “제주4·3특별법은 (...)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여 가해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추궁하고 피해자에 대하여만 명예를 회복시켜 주려는 취지가 아니므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 없이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주민뿐만 아니라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희생당한 군인 및 경찰도 해방 전후 혼란한 이데올로기의 대립과정에서 발생한 희생자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이러한 동법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 이는 당시 우익 단체원으로 활동하면서 진압 과정에 참여하였다가 희생되어 국가유공자가 된 민간인을 희생자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점, 좌익 무장 유격대원으로 활동하다가 수감되었던 자도 동법에 의한 희생자로 인정하고 있는 점 및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탑에는 당시 진압과정에서 희생된 군인 및 경찰의 위패도 함께 봉안되어 있어 사실상 군인 및 경찰도 희생자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에도, 동법에 의한 희생자의 범위에는 군인 및 경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13) 이 표는 2007년 3월 14일자 4·3위원회 통계자료인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심의·결정 현황」을 재구성한 것이다. 그 후 2011년 1월 26일 4·3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심의·결정이 있었지만 이 논문에서는 반영하지 않는다.

우리 헌법의 기념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원칙 (...) ①제주4·3사건 발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 ②군·경의 진압에 주도적·적극적으로 대항한 무장대 수괴급 등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 자로서, 현재 우리의 헌법체제 하에서 보호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희생자의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되, 이 경우 그러한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한다.(4·3위원회 2008:150)

그리고 다음의 [표 2]와 같은 해석도 시도해 볼 수 있다<sup>15)</sup>.

[표 2] 4·3에 있어 사자(死者)와 '희생자'

	학살한 자(전투원)		학살당한 재(비)전투원
	토벌 그룹	항쟁 그룹	민간인
사건 공간			
과거청산 공간	'희생자'	'희생자'에서 제외	'희생자'

[표 2]의 '희생자'에서 제외되는 이들은 [표 1]에서 '불인정'과 '중복 또는 철회'로 집계되어 있다<sup>16)</sup>. 그리고 과거청산의 대상에서 배제된 채,

- 14) 4·3위원회의 '희생자 심의·결정 기준'에는 다음과 같이 '기본원칙'이 명기되어 있다. "희생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제주4·3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통해 희생자들을 신원하고, 용서와 화해를 통하여 국민화합과 민주발전,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는 4·3특별법의 제정취지와 우리 헌법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원칙과의 조화가 바람직함에 따라 4·3특별법 취지를 살려 희생자의 범위를 최대한 폭넓게 인정 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 자는 희생자에서 제외토록 하였다"(4·3위원회 2008:149).
- 15) 이 표를 해석하는데 있어 실제 표에서는 유형화시킬 수 없는 다종다양한 죽음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학살한 자와 학살당한 자 이외에, 사건을 구성하고 있는 방관자나 동조자 등이 존재할 뿐 아니라 학살 이후부터 과거청산 이전 시기에 사망해 버린 4·3체험자도 거기에 해당된다. 전투원이 학살당한 경우도 있는데, 토벌그룹과 항쟁그룹 간에 전투가 종료된 이후 토벌 그룹에 의해 학살당한 항쟁 그룹과 속칭 '9연대 숙청사건'에서 총살당한 군인들의 경우가 그러하다.

'희생자'도 아닌,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도 아닌 애매모호한, 말하자면 '보류의 영역'으로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다<sup>16)</sup>. 때문에 '육지에서 내려온 군정경찰·우익의 횡포에 대한 자위적이고 한정적인 반공'(文京洙 앞의 책:219)이자 '통일 정부를 갈망하는 민중의 의지'(양정심 앞의책:120)가 표출됐던 4·3의 저항적인 역사적 사실 역시 거기에 관여하고 있는 자들의 죽음이 '희생자'에서 배제되어 버림으로써, 그들의 죽음과 함께 공백으로 남게 됐다.

한편, '제외 대상'으로 분류된 자들과 동일한 전투원으로서 사건 진압을 명목으로 항쟁 그룹과 민간인을 무차별 학살했던 군과 경찰, 우익단체원과 같은 토벌 그룹은 '희생자 심의·결정 기준' 어디서도 언급되지 않는다. 4·3위원회의 진상조사를 통해 '2만 명에서 3만 명에 이르는 무수히 많은 주민들이 대부분 국가공권력에 의해 희생'(제주4·3위원회 앞의책:373)됐음이 밝혀졌지만, 동시에 그들을 민간인 신분의 사자(死者)와 함께 '희생자'로 재편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진상조사와 '희생자 심의·결정' 간의 불일치로 학살한 자에게 제도적인 면죄부를 제공하게 됐다. 제주도민과 4·3유족에게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 사과함으로써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이 공식화될 수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진행됐던 '희생자 심의·결정'은 학살한 자와 학살당한 자를 하나의 '희생자'로 재

16) '제외 대상'이 되어버린 유가족들의 신고와 그들에게 종용된 신고 철회, 그리고 '불인정'에 대해서는 고성만(2008)을 참고할 것.

17)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4·3위원회 2003:373)는 “가해자별 현황을 보면, 제주도의회 신고서에는 토벌대 84.0%, 무장대 11.1%의 비중을 보였고, 4·3위원회 신고에서는 토벌대 78.1%, 무장대 12.6%로 나타났다”고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서 언급된 가해자는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상의 표기일 뿐, 실제 4·3위원회가 선별하는 구체화된 대상이자 '희생자'의 반대 개념으로서의 '가해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희생자'에서 제외시킨 이들을 '희생자'의 반대 개념인 가해자로 범주화하지 않는다. '가해자'이기 때문에 희생자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

편시킴으로써 학살의 집행자, 즉 구체적인 가해자를 은폐하고 상세한 범죄 행위를 면책시켜 버리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수많은 여명의 학살을 가져 왔던 공권력의 토벌은 대통령의 표현처럼 잘못된 것이었으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제주4·3위원회 앞의 책:150)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고착화돼 버리게 됐다.

4·3에 있어 이제 '희생자'는 본래의 사전적 의미나 당사자들의 인식, 체험과는 달리 학살한 자와 학살당한 자 모두를 포괄하고, 한국정부에 저항했던 자를 배제시키는, 수난사적 맥락을 갖는 사자(死者)의 조합으로 재구성되어 버리게 됐다. 또 사자(死者)의 정체성 변용을 가능하는 중요한 기점으로, '산 자(生者)와 죽은 자(死者) 간의 커뮤니케이션'(田中 앞의 글:25)을 통해 사건이 종결된 후에 만들어졌지만 사건을 대변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사자(死者)로 역할하게 됐다. 이로 인해 사자(死者) 간의 죽고 죽임을 둘러싼 구체적인 가해와 피해의 사실은 더욱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게 됐고, 다양한 개개인의 죽음은 '희생'이라는 범주로 일원화되는 동시에, '희생자'와 '제의 대상'이라는 서열화된 구조로 재구성되게 됐다(高誠晩 2010:174-175). 때문에 '희생자'와 그들의 '유족', 그리고 '제의 대상'이라는 제도화된 새로운 당사자 그룹의 등장과 그들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담론 양상, 그것이 초래하는 제문제들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과 분석틀이 필요하게 됐다. 과거청산 시기에 탄생된 '희생자'가 갖는 특이성은 그 때문이다.

한편, '희생자'를 근간으로 하는 과거청산은 특히 다음의 두 가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어렵게 한다. 우선, '희생자'가 구체화되어 부각되는 상황은 가해자의 실체를 요구하거나 처벌에 대한 논의의 형성을 과거청산 담론인 '화해와 상생, 평화, 용서'에 역행하는, 혹은 이념적이거나 구시대의 낡은 접근으로 맥락화시켜 버림으로써 더 이상 진전되기 어렵게

한다.

둘째, '희생'이라는 공인된 죽음이 토벌그룹과 민간인 사자(死者)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구조는 '제외 대상'이 상징하는 죽음을 논외로 방치시킨다. 그런 상황 속에서 '희생자'를 중심으로 더욱 심화되는 일련의 희생 서사는 '제외 대상', 흔히 폭도라 불리는 사자(死者)의 유가족들을 더욱 더 말하기 어렵게 한다.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겠지만, 유가족들과의 면담이 성사되고 일정정도 상호간의 신뢰가 구축되기까지 필자가 경험했던 그들의 오랜 고민과 탐색의 시간도 다름 아닌 '희생자'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한 유가족의 말하기 어려움은 과거청산 이전 시기에도 그들에게 강요됐다는 점에서 연속적인 것이지만, 오늘날 '희생자'라는 공인된 영역을 다시 의식하지 않으면 안되는, 때문에 '희생자'로부터 느껴지는 더 큰 박탈감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희생자'를 탄생시키고 희생 서사의 효용을 필요로 하는 우리 사회가 그어버린 경계선 역시 그 지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희생자'를 부정하거나 혹은 신성화시켜 나가는 대치구도 속에서, 다시 '희생자'를 에워싸는 경계선의 외부 영역은 4·3 과거청산기에 있어 금기시되는 곳이기도 하다.

### Ⅲ. '희생자'를 의식하는 말하기의 몇 가지 양상

4·3특별법 제5조(불이익 처우금지 등)에는 '누구든지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지만, 이 장에서는 법과 제도가 유발하는 증언의 부자유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난 2000~1년 유가족들이 4·3위원회에 「희생자 신고서」를 제출했

지만, 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철회하도록 회유받고 거기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불인정’당해 버렸던 2006~7년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말과 서술에서 무엇을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우선 유가족들은 「희생자 신고서」에 ‘사망(행방불명) 경위’를 어떻게 기술했는지 살펴보자<sup>18)</sup>.

피해자 김○○은 군·경이 공산당이라고 해서 수배하러 다니므로 숨어서 동가서식하며 산에서 살다가 1948년 △월 △△일 ◇◇ □□□ 속칭 ▽▽

18) ‘제외대상’ 유가족들과의 본격적인 면담은 2007년부터 시작됐다. 그해 4월 3일 제주 4·3평화공원 내 위패봉안소에서 대성통곡하고 계셨던 유가족 A씨를 만나게 됐는데, 그 분으로부터 “작년까지 있던 아버지의 위패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듣게 됐고, 그 후 그것이 ‘희생자’ 신고 철회와 관련된 것임을 알게 됐다. 6~7월에는 4·3후유장애자 및 불인정자 57명의 제심의 문건 작성 작업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4·3위원회의 ‘희생자 심의·결정’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제외대상’과 그 유가족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같은 해 12월경부터 시작됐던 「그들 속의 4·3」(제주 4·3연구소편, 2009)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수집할 수 있었다. 이 논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희생자’ 신고 내용은 유가족들이 사본으로 보관하던 것을 입수하여 발췌한 것도 있고, 한양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돼 있는 4·3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것도 있다. 이상의 수집된 기본 정보를 토대로 현재까지 유가족들과 비정기적으로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면담에 참여해 주신 유가족은 다음의 [표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 그 분들의 요청에 따라 관련된 일체의 정보는 비공개로 기술한다.

[표 3] 면담 개요

이름	출생 연도	거주지	조사 일시 및 장소	사자(死者)와의 관계	‘희생자’ 신고 결과
A	1940년	제주시	2007 4월 3일(제주4·3평화공원), 2010년 2월 1일(자택)	딸	철회
B	1939년	제주시	2008년 2월 5일(자택)	며느리	철회
B'	1933년	제주시		아들	
C	1922년	서귀포시	2008년 1월 23일(자택)	부인	철회
D	1940년	제주시	2010년 4월 1일(자택),	남동생	철회
D'	1942년		2010년 10월 7일(자택)	제수	
E	1942년	제주시	210년 3월 31일(자택)	아들	철회
F	1944년	제주시	2010년 8월 11일(찾집), 2011년 1월 27일(자택)	아들	불인정
G	1936년	제주시	2010년 10월 7일(자택)	여동생	철회

농장 앞 3▽▽4번지 보리밭 담 옆에 내려와 가족의 생사나 알아볼까 기다리던 중 옆 밭 김 메던 할머니의 신고에 의해 경찰이 출동하여 쏘운 총에 의해 살해됨.<sup>19)</sup>

희생자 김○○은 (...) 사건(4·3)이 발생하자 경찰에서 체포령이 내려 어디론가 잠적해 버렸다. 그 후 1949년 봄에 제주경찰서에 체포되어 처형당했다는 소문은 들었으나 지금까지도 시신을 찾지 못하였다. 위 사실을 가족 및 소문을 듣고 알았다.<sup>20)</sup>

피해자 김○○은 4·3 당시 산으로 올라간 후 28세가 되는 19△△년경 토벌대에 의해 피살됐다는 소식을 들음.<sup>21)</sup>

희생자 김○○은 제주4·3사건 당시 25세 나이로 육지에서 학업에 열중하다 내려와 이 곳 저 곳으로 도피 생활을 하다가 군인들에게 붙잡혀 시내 감옥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1949년 △월 □□일 공항 근처에서 낮에 총상을 입어 사망하였으나 시신은 수습하지 못하였고 수형인명부 확인 결과 1949년 ▽월 ◇◇일 사형을 언도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sup>22)</sup>

제주4·3사건 행방불명자 김○○은 (...) 1948년 마을에 있으면 죽을 줄 알고 산에 올라갔다가 1949년 △월 □□일경에 군·경 토벌대에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며, 그 후 1949년 △월 □□일(음력) 경에 행방불명되었습니다.<sup>23)</sup>

제주4·3사건 희생자 김○○은 (...) 1948년을 전후해서는 수시로 ◇◇지

19) 김○○의 딸 A씨가 작성한 「희생자 신고서」에서 발췌.

20) 김○○의 며느리 B씨가 작성한 「희생자 신고서」에서 발췌.

21) 김○○의 부인 C씨가 작성한 「희생자 신고서」에서 발췌.

22) 김○○의 남동생 D씨가 작성한 「희생자 신고서」에서 발췌.

23) 김○○의 아들 E씨가 작성한 「희생자 신고서」에서 발췌.

서에 호출되어 견딜 수없이 구타를 당하여 집에 돌아오는 날이 여러 번 있었으며 (...) 희생자 부부가 자택에서 잠자던 중 이른 아침에 무기를 휴대한 경찰관이 들이닥치자 뒷문으로 피신한 이래 행방불명되었으며 (...) 제주도 △△△에 가매장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으나 시신 수습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까지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sup>24)</sup>

아직 과거청산의 향방을 알 수 없었던 2000~1년경, 유가족들이 제출했던 신고서는 전반적으로 자신의 가족이 억울하게 죽음에 이르게 된 사연을 기술하는 수난사적 문맥이 주를 이룬다. '경찰이 출동하여 쏘운 총에 의해 살해', '제주경찰서에 체포되어 처형', '토벌대에 의해 피살', '군·경 토벌대에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며, 그 후 행방불명'과 같이 신고하는 죽음의 양상 역시 다른 민간인 피해자들의 서술 맥락과 유사하다. 피해를 나열함으로써 '희생' 영역에 편입하려는 수난사적 서사 전략, 거기에는 저항성이라는 사자(死者)의 정체성을 최소화시키려는 의도가 잠재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사자(死者)의 생전 활동에 대해서도 '산으로 올라갔다'가 가장 구체적인 수준의 서술이다. 유가족들은 사자(死者)의 입산 경위에 대해 '군·경이 공산당이라고 해서 수배하러 다니므로'라던가 '경찰에서 체포령이 내려', '이 곳 저 곳으로 도피 생활', '마을에 있으면 죽을 줄 알고', '1948년을 전후해서는 수시로 ○○지서에 호출되어 견딜 수없이 구타 (...) 무기를 휴대한 경찰관이 들이닥치자'와 같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그것이 부당한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한 피치 못할 수단이었음을 적고 있다.

같은 시기, 헌법 소원 등을 통해 4·3위원회의 '희생자' 심사에 대한 우익 측의 이의 제기가 본격화됐는데, 결국 4·3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24) 김○○의 아들 F씨가 작성한 「희생자 신고서」에서 발췌.



판결을 수용하여 '제외 대상' 조항을 명기한 '희생자 심의·결정 기준'을 합의하기에 이른다. 2002년 말부터는 신고서를 제출했던 유가족들에게 4·3위원회로부터 '희생자'와 그들의 '유족'으로 결정됐다는 통지가 전해졌다. 그러던 중, 2006년 중순경부터 '제외 대상'으로 분류돼 버린 이들의 유가족에게 돌연 4·3위원회로부터 '희생자' 신고를 철회하라는 압박이 가해졌다. '신고를 철회하라'는 4·3위원회의 종용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로부터 '불인정'될 것이라는 협박도 받았다<sup>25)</sup>. 필자가 본격적으로 유가족들을 만나기 시작한 것은 그 이후부터였다<sup>26)</sup>.

유가족 : 도청에서 온 거라?

필 자 : 아니우다.

유가족 : 기쁜 뿔허레 온 거라.

필 자 : 4·3 말씀 한 번 들어보젠 와신디에….

유가족 : 들엉 뿔허젠. 몇 번씩 곱은 거. 그디(도청) 강 물어봐게. 그디 다 이실거난.<sup>27)</sup>

25) G씨는 4·3위원회 관계자가 '제외대상'이 된 오빠 김○○의 신고를 철회하라고 종용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26) 유가족들과의 본격적인 면담에 앞서 4·3위원회 관계자 두 명으로부터 '희생자' 신고 철회와 관련한 정황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그들 모두는 지난 십수 년간 4·3 진상 규명 운동을 해오고 있는데, 필자 역시 이들에게서 4·3을 이해하는데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다음의 내용은 그들과 만난 이후에 기록한 필드워크 노트에서 발췌한 것이다. "우연한 술자리에서 김○○ 선배에게 지난 한 주 '희생자 신고 철회서'를 받으러 다녔다는 얘기,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 괴롭다는 얘기를 들었다. 선배는 '그분들의 인물사(史)를 쓰는 것이 나 죄를 씻는 길인 것 같다'고 말했다."(2007년 6월). "(김○○ 선배는) 꽤 오랜 시간 그들이 철회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최악(最惡)을 피하기 위한 차악(次惡)'이었다는 것이 요지다. '4·3하는 사람 중에 항쟁을 제외하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건 최고의 수치'라고 말했다. 선배의 자세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최악(最惡)은 무엇이고 차악(次惡)은 또 무엇일까라는 고민이 남는다. 유가족에게 이 둘 사이의 차이란 있는 것일까. 이 건 누구를 위한 차이일까."(2009년 2월 28일)

필자에게 건넨 첫마디가 '도청에서 왔느냐'였다. 우리의 담화는 그렇게 균열된 상태에서 시작됐다<sup>28)</sup>. 그들 대부분에게는 신고서 제출 이후 읍면동 단위의 공무원으로부터 1~2차례, 도청에서 왔다는 공무원으로부터 2~3차례, 그 외에도 3~4차례의 기억나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4·3을 묻고 갔던 이력이 있었다. 때문에 "들엉 뵈허젠(들어서 뭐 하려고)"이라는 반응은 그들이 과거청산 시기에 당해야했던 수차례의 피조사 경험을 생각할 때 단순히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부의 간접적인 표현일 수만은 없었다. 그것은 상대로 하여금 들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 자체가 이미 확립돼 있는 심적 상태, 거기에는 '몇 번씩 굶은(말한)' 얘기를 다시 했다한들 마주하고 있는 상대가 이전 4·3을 묻고 갔던 이들의 연속일 것이라는 생각, 또 그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개선하는데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 역시 전제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그것은 수차례의 피조사 경험을 통해 체득된 것이었을 것이다.

결국 철회된 신고, 그리고 철회하지 않은 유가족의 신고가 예상대로 '불인정'되면서 4·3위원회는 곧바로 4·3평화공원 위패봉안소에 안치됐던 '제외대상'자들의 위패를 떼내어 버렸다. 위패가 철거돼 버린 것은 유가족들이 과거청산과 '희생자'의 실체를 실감하게 됐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신고 철회 하더라도 위패는 문제없을 것'이라 했던 '철회 도장 받으러 왔던 사람'의 언급도 있었기 때문에<sup>29)</sup> 예년과 같이 4·3위령제에 참석하여 가족의 위패를 찾던 유가족들이 현장에서 받았던 충격은

27) C씨와의 면담 기록에서 발췌.

28) "(...) 우리의 담화는 쉽게 성사되기 어려웠다. 초면부지의 증언자와 시도해왔던 라포(rapport) 형성 시도의 경험도 소용없었다. 앞서 이들을 거쳐 갔던 다양한 사람들이 남기고간 흔적이 마치 그들에게 후유증으로 남아 있는 것 같았다."(2008년 1월 23일, 필드워크 노트에서 발췌)

29) 2010년 4월 1일 제주도 ○○리 자택에서 D'씨와의 면담 기록에서 발췌.

더 클 수밖에 없었다. 2007년 4월 3일 오전, 처음으로 위패가 없어진 것을 확인한 유가족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가서 보니까 다 떼어버렸더라고. 인간적으로도 참 내가 기분이 나쁜 게, 그렇게 해도 한 마디 말이 없어요. 4·3위령제 하기 전에 다 떼어 버리라고 (위에서) 독려를 한 거지.<sup>30)</sup>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뭐 어디 가서 따져볼 생각도 들지 않고 (...). 그 전 신산공원이나 탐동에서 위령제 할 때부터 다 이름이 있었는데, 책에도 나오고 했는데, 요즘 들어 없애버린 겁니다 그것이. 그 도장 받아간 후로 (...).<sup>31)</sup>

작년엔 가 보니까 아버지 이름이 떼어져 있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야 죽은 거 같고, 죽은 영혼이 이제도 숨어서 다니는 것만 같아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정말 앞이 안보일 정도로 울면서 집에 돌아왔던 게 생각이 납니다.<sup>32)</sup>

난 이 4·3얘기만 하면은 온 몸에서 전율이 일어나. 몸서리쳐져. 4·3만 얘기 나오면. (...) 지금 저희 아버지 위패가 떼어져 있습니까? 아마 그런 결정이 내려졌다면, 정치적 분류 대상으로 우리 아버지가 제외된 것이겠지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현재의 정치적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sup>33)</sup>

그렇게 4·3평화공원에서 위령제가 치러지기 훨씬 이전부터 매년 확

30) 2010년 8월 11일 제주도 ○○동 찻집에서 F씨와의 면담 기록에서 발췌.

31) 2010년 4월 1일 제주도 ○○리 자택에서 D'씨와의 면담 기록에서 발췌.

32) 2008년 3월 28일 제주4·3연구소가 주최한 '4·3증언 본풀이마당'에서 증언했던 A씨의 발언 내용에서 발췌.

33) B'씨와의 면담 기록에서 발췌.

인되던 사자(死者)의 이름이 한순간 실종되어 버린 것이다. 과거청산기, 구체적으로는 '4·3위원회 관계자가 「신고 철회서」에) 도장 받아간 후'에 벌어진 위패의 철거는 공공의 장(場)에서 십수 년간 지속됐던 이들의 연속적인 추모 경험을 생각할 때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새롭게 '희생자'를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희생자'에서 배제된 사자(死者)에 대해 말하고 그들을 추모하는데 있어 '희생자'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 다시 주어진 금기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전략의 창출이 공인된 죽음의 영역인 '희생자'로부터 강요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의 증언은 이러한 문제를 생각하게 한다.

아버지 위패가 철거되어버린 것은 기분 나쁘지만, 크게 위축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님의 위패가 공원에 있기 때문에 4월 3일 위령제에도 참석합니다. 다만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4·3공원도 '폭도공원'이라고 하는 마당에 유족회 행사에 자주 참여하게 되면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됩니다.<sup>34)</sup>

그런 측면에서 '나는 가해자의 유족이면서 피해자의 유족이 아니겠느냐' 나는. 그런 어떤 자격지심이랄까. 그런 게 선뜻 유족회, 아니면 4·3행사 이런 데 나설 수 없도록 하는, 잠재의식 일런지도 모르지. 가해자, 피해자. 가해자나 피해자나. (...)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길 하지. '(위령제에) 왜 안 오느냐, 왜 참석 안하느냐고. 그럼 나는 '가서 하라'고, '나 안가도 많은 분들이 가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하지 않느냐'면서, 난 그런 얘기를 했어. '나 그렇게 덜 서러운 사람들의 곱판에 끼고 싶지 않다'고 말이야.<sup>35)</sup>

34) 2010년 8월 11일 제주시에서 F씨와의 면담 기록에서 발췌.

35) B'씨와의 면담 기록에서 발췌.

우의 측으로부터 '4·3공원은 폭도공원'이라 매도되는 상황에서 자신으로 인해 다른 '희생자'의 '유족'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유족회 행사에 참여하기가 염려된다는 그 자신의 아버지가 '가해자이자 피해자'라는 생각이 '자격지심'이 되어 '나설 수 없고', '덜 서러운 사람들의 굿판에는 끼고 싶지 않다'며 나서고 싶지도 않다는 그 '희생자'에서 박탈됐지만 매순간 '희생자'를 의식하지 않으면 안되는 강박관념이 '희생자'로부터 강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말한 '덜 서러운 사람들의 굿판'이 희생 서사가 전개되는 공간이라면, 거기에 참여하기 염려되고 또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일종의 '희생자'로부터 비롯된 박탈감은 '희생자'가 '영령'과 '성령'으로 변용되어 가면서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인식과 실천에서 오랫동안 '굿판'의 경계를 넘나들며 소통하고 추모해왔던 이들이 과거청산기에 '희생자'를 기점으로 그어지는 경계선 외부로 재위치되면서, 정형화된 '희생'과 구체적인 '희생자'를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버린 것이다.

'희생자'와 희생 서사는 이제 노골적으로 '희생'으로 합의된 죽음을 공식화된 장에서 말하고 조직화시키면서 '희생자'의 정체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폭도, 즉 경계선 외부의 죽음을 말하기 어렵게 만들어 버린다.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공인된 '희생'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을 강요한다. 그러면서 '희생자' 측은 '제외 대상'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또 [그림 1]과 같이 그들의 구호와 선전에 빈번하게 등장시키는 폭도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의 공인된 죽음인 '희생'이 그들을 배제시켜 이뤄낸 성과라는 점 또한 말하지 않는다. 단지 그들 폭도와 동일시되는 것을 강하게 거부할 뿐이다.

이러한 폭도와의 지속적인 거리두기, 그러면서 정작 폭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희생 서사는 과거청산의 법과 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내셔널

리즘적 속성과 '희생자'라는 사자(死者)를 탄생시킨 네셔널한 욕망이 결합된 것임을 부인하기 어렵다<sup>36)</sup>. '희생자가 아니라 폭도'라는 우익 측의 비난에 대해 '폭도가 아니라 희생자'라는 더 큰 단결된 목소리로 대응할 수 있는 동력도 거기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 IV. 나가며 - 다시 '누가 희생자인가'에서부터

이상의 논의를 통해 4·3위원회의 '희생자 심의·결정'을 죽음의 선별과 재구성이라는 관점에서, '희생자'와 거기서 비롯되는 희생 서사를 폭도라 불리는 '제외 대상' 유가족들과의 면담을 통해 고찰했다.

'국민화합에 이바지'<sup>37)</sup>하게 된 4·3의 '희생자'는 60여 년 전 국민국가 형성기의 남한 사회에 작동됐던 폭도에 대한 타자화를 연상하게 한다. '희생자'가 학살당한 민간인과 그들을 학살했던 군·경·우익 단체원들의 조합이라 할 때, 당시의 학살을 가능하게 했던 선별의 논리가 오늘날의 과거청산기에 합의된 '제외 대상'으로 재현되기 때문이다. '학살을 통해 반공을 정점으로 하는 새로운 국가질서가 창조'(김성례 1998:160)된 것이라면, 학살이라는 과거에 재접근하고, 나아가 청산하려는 과정에서 시도되고 있는 오늘날의 '국민화합'은 폭도라 불리는 사자(死者)를 배제

36) 이 부분은 岡(2000:55=2004:117)의 분석에서 영감을 얻었다. 그녀는 스피버그의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Saving Private Ryan)'(1998)의 서사 분석을 통해 "사건을 완결한 서사로 리얼하게 재현하고 싶어하는 스피버그의 욕망은 타자가 당한 폭력을 부인하고 망각하는 것이며, 그의 네셔널한 경험, 네셔널한 욕망과 분리하기 어렵게 결부되어 있다"고 분석한다.

37) 4·3특별법 제1조(목적)에는 '이 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시키면서 폭력과 권위의 질서를 재현시키고 있는 것이다. '제외 대상'이 되어버린 사자(死者)의 유가족들이 지난 10여 년의 과거청산기에 겪어야 했던 신고와 철회, 불인정, 위패의 철거, 거기에 매순간 '희생자'를 의식해야 하는 상황은 모두 그러한 질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었다.

그 점에서 '희생자'와 그로부터 전개되는 희생 서사는 필연적으로 이 중성을 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사건 후에 만들어진 '희생자'가 죽음의 선별과 재구성이라는 인위적 재편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되는 '폭도가 아니라 희생자'라는 희생 서사에는 '희생'의 이념적 순결성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다시 누군가를 희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폭력성을 내재하고 있다.

희생 서사는 또한 '희생자' 측의 내셔널한 욕망을 반영한다. 사건 당시부터 '레드 콤플렉스'를 안은 채 반공국가의 국민으로 살아왔던(혹은 살아오기를 강요받았던) 이들이 과거청산기에 접어들어 공인된 역사, 인정 받는 죽음에 편입되기 위한 전략으로 희생 서사를 채택하면서, 끊임없이 그 '레드'와의 차별성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희생자' 측이 구사하는 희생 서사는 자신들의 희생만을 맥락화시켜 말할 뿐, 그것이 오늘날의 남한 사회라는 한정된 시공간에서만 합의되고 통용될 수 있는 죽음의 범주라는 점, 때문에 '희생'은 사실성이 전제될 수 없는 죽음의 조합이라는 점을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과거청산이 점차 위령과 복원, 기념에 집중되면서 이러한 상황은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 특히 절대 다수의 '희생자' 측은 '희생자'로는 대변될 수 없는 영역의 사자(死者)를 용납하지 않는다. 자칫 '희생자'의 순결성을 헤칠 수 있으므로 그들은 경계선 외부에 위치되어야만 하는 사자(死者)인 것이다.

그렇다면, '희생자'로는 표상 혹은 재현 불가능한 영역의 사자(死者)와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희생 서사가 배제시키는 폭도와 그들의 유가족의 말은 여전히 수용 불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희생 서사가 그어버린 경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우선 '희생자는 누구인가'라는 묻고 답하기를 일상에서 지속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은 어떠할까. 궁극적으로는 사건을 구성하는 다종다양한 죽음이 사실성에 기반을 둘 수 있도록 사자(死者)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것, 즉 '희생자'를 탄생시켰던 기준과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우리 사회의 합의에서 자유로워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의 4·3 지배담론인 '화해와 상생, 평화, 용서'로부터 자유로운 사고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시도이기도 하다. 또 '희생'이라는 외피를 두르고 있으나 그 속성은 누군가를 희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희생자'를 추도하고 기억하는 것만큼 그로 인해 희생될 수 있는 누군가를 매순간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우리에게 다차원적인 과거청산의 전략이 요구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희생자'에서 안주하는, 혹은 그것이 가로막는 역사적 사실에 접근하기 위한 '저항적 기억투쟁'(양정심 앞의책:245)의 필요성에 대해 '앞으로 더 40년이 흘러 (...) 커다란 역사의 눈으로 볼 때'<sup>38)</sup>를 기억하고 '갈등과 대립이 해소된 후에 이루어져도 늦지 않다'(헌법재판소 앞의책:414)는 지적에 대해 큰 설득력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희생자는 누구인가'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때 '희생자가 아니라 폭도'

38) 이 내용은 (사)제주4·3연구소가 주최한 4·3 6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기억을 넘어 화해로'(2008년 4월 3일~5일, 제주시)에서 발표된 논문 「학살의 기억 너머, '항쟁'의 역사를 위하여」에 대한 지정토론에서 발췌한 것이다. 필자는 이 회의에 참가하지 못한 관계로 인터넷 뉴스 페이지(<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5528>)에서 그 내용을 확인했다.



라는 말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힘도, 희생 서사가 전개하고자 하는 '화해와 상생, 평화, 용서'도 더 구체화될 수 있지 않을까.

## 참고문헌

- 고성만, 「4·3위원회의 기념사업에서 선택되거나 배제되는 것들」, 『역사비평』 통권 82호, 역사문제연구소, 2008.
- 김성례, 「국가폭력과 여성체험-제주 4·3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 제주4·3연구소, 1998:154-172.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포괄적 과거사 정리-화해와 상생의 미래를 향해』, 2008.
- 박찬식, 『4·3과 제주역사』, 도서출판 각, 2008.
- 법제처, 2006, 「동 위원회가 군인과 경찰을 희생자로 심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안전번호 06-0120.
- 양정심, 『제주4·3항쟁-저항과 아픔의 역사』, 도서출판 선인, 2008.
- 양조훈, 「4·3희생자 결정과 그 의미」, 『濟州4·3』 제7호, 제주4·3희생자유족회, 2007.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
- \_\_\_\_\_, 『화해와 상생-제주4·3위원회 백서』, 2008.
-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특별법 제정7주년 기념 4·3유족회지』 제6호, 2006.
- \_\_\_\_\_, 『제주4·3특별법 제정8주년 기념 제주4·3』 통권 제7호, 2007.
- \_\_\_\_\_, 『제주4·3 60주년 기념 제주4·3』 통권 제8호, 2008.
- \_\_\_\_\_, 『제주4·3 61주년 기념 제주4·3』 통권 9호, 2009.
- \_\_\_\_\_, 「4·3사건 관련 소송 재판부에 드리는 글」(2009년 9월 10일).
- 헌법재판소,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의결 행위 취소 등」, 『헌법재판소 판례집』 13-2집, 2001.
- 高誠晩, 「濟州·虐殺と追悼—『死者』の再構成という観点」, 『国家と追悼—『靖国神社』か、国立追悼施設か』を超えて」, 山本浄邦編, 社会評論社, 2010:163-209.
- 田中悟, 「現代韓国における『死者の政治学』:—独立記念館から国立墓地まで—」, 『北

東アジア研究』第18・19合併号, 島根県立大学北東アジア地域研究センター, 2010:15-32.

高橋哲哉, 『国家と犠牲』, 日本放送出版協会, 2005(=이목 역, 『국가와 희생』, 책과 함께, 2008).

富山一郎, 『増補 戦場の記憶』, 日本経済評論社, 2006.

文京洙, 『濟州島四・三事件—「島のくに」の死と再生の物語』, 平凡社, 2008.

岡真理, 『記憶/物語』, 岩波書店, 2000(=김병구 역, 『기억과 서사』, 소명, 2004).

池澤優・アンヌブッシィ編, 『非業の死の記憶—大量の死者をめぐる表象のポリティックス』, 秋山書店, 2010.

**Abstract**

Liquidation of the Past History of April 3  
and The Concept of 'the Victim'

- Reconsideration of the Reorganized Death by the Social Agreement -

Koh, Sung-Man\*

This study aims at reconsidering the process of deliberating the officially-recognized victims by National Committee for April 3 from the perspective of selection and reconstitution of the dead, which was mainly conducted while setting the history of April 3 straight. To achieve this, first, I analyze 'the victims' and Victim Narrative by interviewing the red, that is the families of the deads, who were excluded from 'the victim'. Second, I approach 'the victim' from that the nation intendedly reorganize the deads, not a simply officially-recognized death. Third, I inquire into how 'the victim' and Victim Narrative put pressure on the families, who were excluded from 'the victim'. Finally, I review any possibility of the inherent violence in selecting and reorganizing the dead, and seek for the way to transcend the boundary between 'the victim' and the people who were excluded from 'the victim'.

**Key Words**

April 3, Special Act for April 3, National Committee for April 3, liquidating past history, the victim of April 3, mob(the Reds), the boundary between the deads, Victim Narrative

---

\* Department of Sociology, Graduate School of Letters, Kyoto University

교신 : 고성만 690-042 제주도 제주시 용담2동 934-3번지  
(이메일 : wikigarden@gmail.com 연락처 : 064-742-0102)

논문투고일 2010. 12. 23.

심사완료일 2011. 01. 24.

게재확정일 2011. 02. 16.

